

파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 처리비용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-137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3. 09. 17.
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☐ 개정이유

- 축산폐수처리업체는 대부분 영세한 업체로서 유류 가격의 상승 등으로 차량유지 및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수수료를 현실화 하여 축산폐수 수집·운반 업체의 운영난 해결과 안정적인 축산폐수 처리를 도모 하고자 함.

☐ 주요골자

- 축산폐수 수집·운반수수료를 ℓ 당 5원에서 7원으로 인상함.

파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
처리비용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파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
개정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환경보호과 ☎ 940-4492
입안자	환경보호과장	백철현
	환경시설담당	박완재
	담당자	이성원

[별표]

축산폐수의 수집·운반수수료 및 처리사용료

구 분	단위	금 액(원)			비 고
		계	수집·운반수수료	처리시설사용료	
허가대상시설	1ℓ 당	10	7	3	
신고대상시설	1ℓ 당	9	7	2	
신고대상시설 규모미만	1ℓ 당	7	7	-	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					개정안					
축산폐수 수집·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						축산폐수 수집·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					
구분	단위	금 액(원)			비고	구분	단위	금 액(원)			비고
		계	수집·운반 수 수 료	처리시설 사 용 료				계	수집·운반 수 수 료	처리시설 사 용 료	
허가 대상 시설	1ℓ 당	8	5	3		허가 대상 시설	1ℓ 당	10	7	3	
신고 대상 시설	1ℓ 당	7	5	2		신고 대상 시설	1ℓ 당	9	7	2	
신고 대상 시설 규모 미만	1ℓ 당	5	5	-		신고 대상 시설 규모 미만	1ℓ 당	7	7	-	